

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2017. 2. 24.
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

1. 제안경위

- 가. 제안자: 성동구청장
- 나. 제출일자: 2017. 2. 14.
- 다. 회부일자: 2017. 2. 17.(의안번호: 1077)

2. 제안이유

「여성발전기본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조례」
전부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의 제명 변경 사항 반영 (안 제1조)
 - 「여성발전기본법」 → 「양성평등기본법」
- 나. 관련 조례 개정 사항 반영 (안 제20조, 안 제22조)
 -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」 →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
 - 「서울특별시성동구여성위원회」 →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위원회」
- 다.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 규정 정비 (안 제24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16. 12. 29. ~ 2017. 1. 18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결과, 신설·강화 규제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5)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여성발전기본법」이 「양성평등기본법」으로,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」가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, 조례 내용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, 그 밖의 조문들은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됨.
- 다만, 상위법인 「여성발전기본법」이 「양성평등기본법」으로 2014. 5. 28.자로 전부개정 되었음에도 적기에 반영하지 않고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점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임.